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74 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 박찬대·노종면·유동수

이훈기 • 허종식 • 모경종

맹성규 · 김교흥 · 임호선

김용만 • 진선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「법원조직법」 개정안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해사민사사건,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하고,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임(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, 제376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0180호),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81호), 「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5호), 「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9호), 「중재법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6호),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8호), 「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· 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해사민사사건의 관할) ① 「법원조직법」 제28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관할법 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다른 지역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사사건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제24조의3(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)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.

제31조 중 "제7조 내지"를 "제7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5조부터 제18 조까지,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,"로 한다.

제376조제1항 후단 중 "지방법원"을 "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방법원"를 "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 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	<u> <삭 제></u>
<u> 판적)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</u>	
일로 선박소유자, 그 밖의 선박	
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	
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	
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	
제14조(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	<u><삭 제></u>
판적) 선박채권(船舶債權), 그	
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	
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	
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	
할 수 있다.	
제19조(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	<삭 제>
판적) 해난구조(海難救助)에 관	
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	
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	
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	
<u>제기할 수 있다.</u>	
<u> <신 설></u>	제24조의2(해사민사사건의 관할)
	① 「법원조직법」 제28조의8
	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
	건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
	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

<신 설>

제31조(전속관할에 따른 제외) 전 속관할(專屬管轄)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, <u>제7조 내지</u> 제25 조,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76조(증거보전의 관할) ① 증 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 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.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 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<u>지</u> 방법원에 하여야 한다.

관할로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
는 다른 지역관할 해사국제상
사법원에 해사사건에 관한 소
를 제기할 수 있다.
제24조의3(지방법원과 해사국제
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)
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
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
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
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.
제31조(전속관할에 따른 제외) -
<u>제</u> 7조부터 제12조
까지,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,
제20조부터 제24조까지,
제376조(증거보전의 관할) ①
<u> </u>
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

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

 ②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
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
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 청을 할 수 있다.

2 -				
<u>지</u> 기	방법원	또는	해사국	·제상사
<u>법원-</u>				